

광주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가단5115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58,597원 및 그 중 75,962,379원에 대하여 2024. 1. 4.부터 2024. 6. 19.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6,070,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6,070,6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6,070,615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원고는 2021. 6. 1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7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1. 6. 17.부터 2022. 6.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22. 6. 14. 보증기한이 2023. 6. 16.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E은행은 2023. 5. 23.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4. 1. 4. 피고 A를 대위하여 E은행에 75,962,3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지급금, 미수위약금 합계 1,796,218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피고 A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9천만 원으로 하는 2018. 4. 6.자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천만 원으로 하는 2018. 12. 31.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 A는 2023. 2. 9. 자신의 언니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23. 2. 9. 무렵 피고 A의 적극재산은 412,000,000원 상당¹⁾ 이고, 소극재산은 472,848,101원 상당²⁾ 으로, 피고 A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마.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조합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D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24. 2. 14. 이 사건 부동산이 I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2)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4. 3. 26.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42,520,995원에 대하여 F조합에게 322,833,036원을, G조합에 대하여 6,450,380원을, 피고 C에 대하여 46,070,6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C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에서 배당표 경정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58,597원(= 대위변제금 75,962,379원 + 대지급금 및 미수위약금 합계 1,796,21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5,962,379원에 대하여 2024.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4. 6. 19.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던 점, ②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 4. 25.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에게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바,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는 이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C은 피고 A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A의 친언니로서 피고 A가 운영하는 식자재 사업을 도와주면서 십수년간 수시로 피고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지급받아 왔고, 2021. 3. 5.경에는 피고 A로부터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차용금 합계 7,400만 원을 2022. 12. 31.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A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표에서 위 사해행위에 기초하여 피고 C에게 46,070,615원을 배당하도록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46,070,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6,070,615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6,070,615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별지

9,920,000원, F조합에 대한 채무293,274,504원, H카드 (통합)에 대한 채무 9,495,000원, 피고
C에 대한 채무 74,000,000원